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4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2. 제안이유

도서관 관장의 임명, 도서 분실에 따른 수수료, 부속시설의 대관, 도서관운영위원회,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독서진흥시책의 강구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 명시(안 제2조)
- 나. 구립도서관 설치, 업무, 운영 및 지원,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3조~제7조)

- 다. 구립도서관 이용자,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명시(안 제8조~제11조)
- 라. 도서관 자료의 기부 규정을 신설하고, 자료의 대출, 위탁 및 관리,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2조~제15조)
- 마. 도서관 부속시설의 대관 신청 및 사용료 지급 및 환불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6조~제18조)
- 바. 종전 조례상 위원회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임기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9조~제25조)
- 사. 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(안 제26조)

4. 관계법령

- 가.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30조
- 나.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본 전부개정조례안은, 도서관 운영상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명시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조 : 조례의 목적 ○ 제2조 : 독서진흥시책의 강구 ○ 제3조 : 설치 ○ 제4조 : 업무 ○ 제5조 : 타 기관과의 협력 등 ○ 제6조 : 운영 및 지원 ○ 제7조 : 조직 및 인력 ○ 제8조 : 이용자 준수사항 ○ 제9조 : 회원자격 ○ 제10조 : 회원탈퇴 ○ 제11조 : 회원지위 상실 ○ 제12조 : 자료대출 ○ 제13조 : 위탁자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4조 : 자료 등의 기부 ○ 제15조 : 도서관자료의 변상 ○ 제16조 : 부속시설의 대관 ○ 제17조 : 부속시설의 사용 ○ 제18조 : 사용료 등 ○ 제19조 :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○ 제20조 : 위원회 구성 ○ 제21조 : 위원의 임기 ○ 제22조 :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○ 제23조 : 위원의 위촉 해제 ○ 제24조 : 위원회 운영 ○ 제25조 : 수당 등 ○ 제26조 : 포상

○ 독서진흥시책의 강구 신설(안 제2조)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「독서문화진흥법」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」

-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수립된 제3차 독서문화진흥계획 (2019~2023)에서 지자체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 포함하도록 명시

<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 운영 현황>

구분	계	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	도서관 관련 조례에 조항 마련	관련 규정 없음 (금천구 포함)
자치구 수	25	15	6	4

※ “독서문화진흥조례”주요 골자 :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, 독서의 날 지정,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,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 등

○ 구립도서관의 업무 신설(안 제4조)

구립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,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구 지역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
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및 정책 지원
3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」에 따른 독서정책분야 민관협치 활성화
4.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」

- 「도서관법」 제28조1)(업무)에 더해 우리구의 구정을 반영한 구립도서관 업무를 명시

1) 「도서관법」제28조(업무)

1.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
2.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4.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
6.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

○ **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 신설(안 제9조)**

- 책이음서비스(2019.3월 개시)에 따라 협약도서관의 회원이 우리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 현실 반영

※ “책이음서비스” :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협약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

○ **도서관 자료 변상 수수료 신설(안 제15조)**

- 도서관자료 복구 시 RFID태그 및 스티커 부착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을 원인 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부과(도서1권 당 1,000원 부과)

※ 부담액 : RFID-Chip, 감춤스티커, 청구기호라벨, 보호제등 비용

※ 상당 수 자치구는 변상규정으로 동일자료 변상원칙의무만 부여하고 있으며, 일부 자치구에서 자료정리비용 추가 부담 규정마련

〈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료변상 등에 관한 규정 현황〉

구 분	계	동일자료 변상 (금천구 포함)	동일자료 및 자료정리비용 부담	관련 규정 없 음
자치구 수	25	20	4 (동대문, 동작, 서초, 강동)	1

※ 자료정리비용 : 500원~1,000원 등 실비 부담

○ **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신설(안 제8, 11조)**

-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민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, 행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안을 규정함

○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(개정)

-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 보완

구 분	현 행	개정안
구 성	관장과 관내의 문화계,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10인 이내	당연직(소관 국장) 및 위촉직(구의원, 구민 및 독서전문가) 등 10인 이내
임 기	2년 (연임제한규정 없음)	2년 (1회 연임)
회 의	위원장이 소집	정기회의 : 반기별 1회 임시회의 : 필요시
실 무 협의회	없 음	신설 (구립도서관별 설치)

○ 부속시설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

- 현재 부속시설로 ‘다목적홀’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속시설을 3종으로 구분하고 대관비용을 세분화

변경전		변경후	
시설명	대관료 (1일)	시설명	대관료 (시간당)
다목적홀	50,000원	문화강좌실(20석 이상)	20,000원
		세미나실(10석~20석 미만)	10,000원
		동아리실(10석 미만) +	5,000원

다. 검토결과

본 전부개정조례안은, 도서관 운영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이용자 등의 권리·의무 명시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나목에는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30조 및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3조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붙임 1. 관련 법령 1부.
2.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부.

「도서관법」

[시행 2018. 3. 13] [법률 제15167호, 2017. 12. 12, 일부개정]

제27조(설치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3. 25.>

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3. 25.>

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"도서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3. 25.>

[제목개정 2009. 3. 25.]

제30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3. 25.>

「독서문화진흥법」

[시행 2017. 3. 21] [법률 제14428호, 2016. 12. 20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20.>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' 와 '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' 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, 우리구에서 계획 중인 「○○구 책 읽는 ○○ 추진협의회」가 조례에 규정된 실무협의체의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와 '구청장이 정한다' 의 규정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?(서울특별시 ○○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등 관련)

[의견11-0044, 2011. 4. 20., 서울특별시 성북구]

【질의요지】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, 제정할 수 있다면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에 협의·의결에 관한 사항,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지?

【의견】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에 협의·의결에 관한 사항,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【이유】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3항은 “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구청장에게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위임한

것으로서 그 규정형식을 규칙으로 할 것인지, 훈령·예규 등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, 이 사안과 같이 구청장은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

또한, 해당 조례 제19조제3항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협의·의결에 관한 사항,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둔 취지는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므로,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무협의체 운영방법과 위원 구성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, 조례에서는 실무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, 용어사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도 추진협의회가 아닌 실무협의체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.